

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

본 협약은 『가족친화문화 확산 협의회』의 구성을 통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각종 교류·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1조(기본원칙) 본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자간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협약 당사자는 협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각 기관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연계·협력한다.
2. 각 기관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, 인식개선 캠페인, 연구, 컨설팅 및 교육 등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.
3. 각 기관은 가족친화 관련 전문 인력의 교류, 역량강화, 공동 활용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.
4. 각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.
5. 각 기관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.

제3조(협약이행) 각 기관은 협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협약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그 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. 단, 협약해지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·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6월 27일

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
원 장 이 사 장 대 표 이 사

代 行 人 士 김 해영 代 行 人 士

부산여성가족개발원 대구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
원 장 대 표 본 부 장

代 行 人 士 代 行 人 士 代 行 人 士